

●중양해양안전심판원공고 제2026-02호

시정권고 재결

2025년 12월 30일 중양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01월 07일

중양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

**중양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6-02호(시정권고 재결공고[중양해심 제2025-012호
(낚시어선 명진2호, 어선 상진호 충돌사건)])**

사 건 명 : 낚시어선 명진2호 · 어선 상진호 충돌사건

해양사고관련자 : 박** (****.**,*.*)

전*** ***, ****, *****

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상진호는 2023. 9. 12. 23:42경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상백도 등대로부터 257도 방향, 3.1해리 해상에서 명진2호와 충돌하였습니다.

이 충돌사건은 서로 시계 안에 있는 야간에 항해 중이던 상진호가 자선의 진로 전방에서 정류하고 있는 명진2호를 발견하고도 미리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은 채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, 물뚝을 내리고 정류하고 있던 명진2호가 피항협력동작을 늦게 취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

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선박 운항 중 ① 항상 육안 및 레이더에 의한 주변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도록 하고, ②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미리 동작을 크게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 항해하도록 하며, ③ 조업과 항해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피로도가 누적되지 않도록 무리한 운항을 자제하도록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